

안산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노외주차장)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1001

제출년월일 : 2009. 10. 7.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1. 제 안 이 유

가.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

- 반월동은 도·농복합 지역으로 아파트·공장·기업체 입주가 지속되고 있는 개발지역으로 상록수보건소와는 6.7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을 비롯한 저소득층 주민 등이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건소를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 지리적 위치로 인한 공공의료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친형적인 공업지역으로 저소득층 근로자가 많아 반성질환과 음주·흡연·대기환경 등에 따른 건강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반월지역에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고품격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보건지소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대한 도시 관리계획 수립절차의 일원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하여 안산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2. 주요내용

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

ㄱ) 주차장 (변경)결정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1	주차장	노외 주차장	경기도 안산시 진건동 산65 9 외 4필지	2,849	증)657	3,506	안도제2001 ·31호(5.16)	제2종인반 주거지역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41	주차장	주차장부지 면적증가	기성주차장 면적오류로 인한 면적정정

└) 주차장(변경)결정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1	주차장	노외 주차장	경기도 안산시 건건동 산65-9 외 3필지	3,506	감)1,320	2,186	안고제2001 34호(5.16)	제2종일반 주거지역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41	주차장	주차장 일부면적(1,320m ²)을 공공청사로 변경	상록수보건지소 신축으로 인하여 기존 반월 역 환승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면적감 소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ㄱ)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43	공공 청사	보건지소	경기도 안산시 건건동 산65-9 외 2필지	-	증)1,320	1,320		제2종일반 주거지역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3	공공청사	주차장에서 공공청사로 변경	의료기능이 취약한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는 양질의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도시형보건지소 전립개회으로 인하여 반월역환승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주차장부지 일부를 공공청사(보건지소)로 결정(변경)

3. 검토의견

- 반월도시보건지소 건립은 소외 지역의 보건기관 인프라 확충과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및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 반월동 지역주민의 숙원이며, 한 차원 높은 보건의료 혜택을 통하여 의료비 절감 등 삶의 질 향상과 건강생활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임.
- 아울러 이미 확보된 국·도비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조기집행을 권고하였으며, 동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선정기관 취소와 함께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므로 조속한 행정절차가 요구되며
- 본 시설은 대상지역 일원의 교통현황과 환경성을 분석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 보건지소 이용객을 위한 충분한 건축공간과 주차장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였음

4. 관계법령 말체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⑤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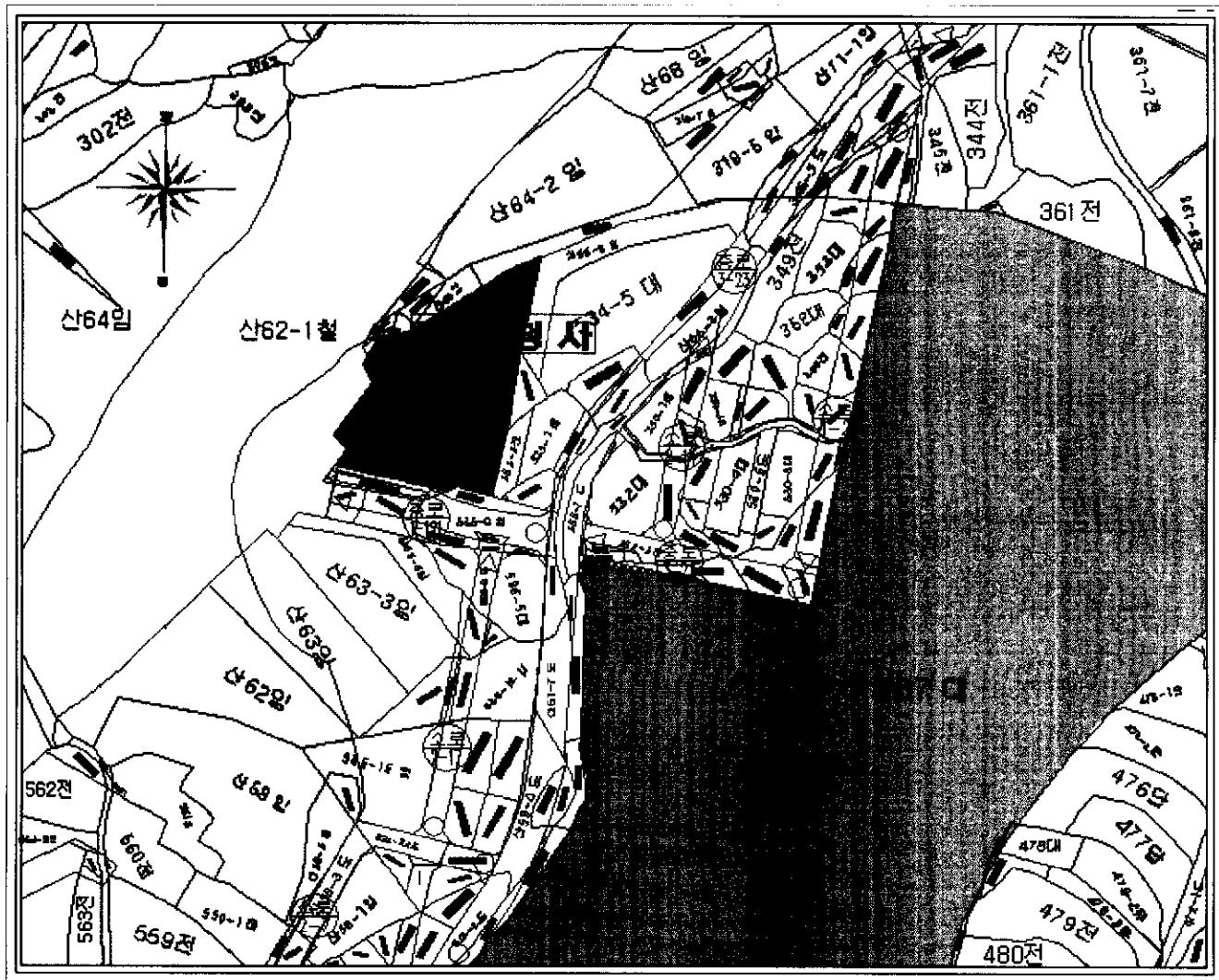
•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⑦법 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3. 다음 각 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 자. 광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첨부자료 : 도시 관리계획 시설(변경) 결정도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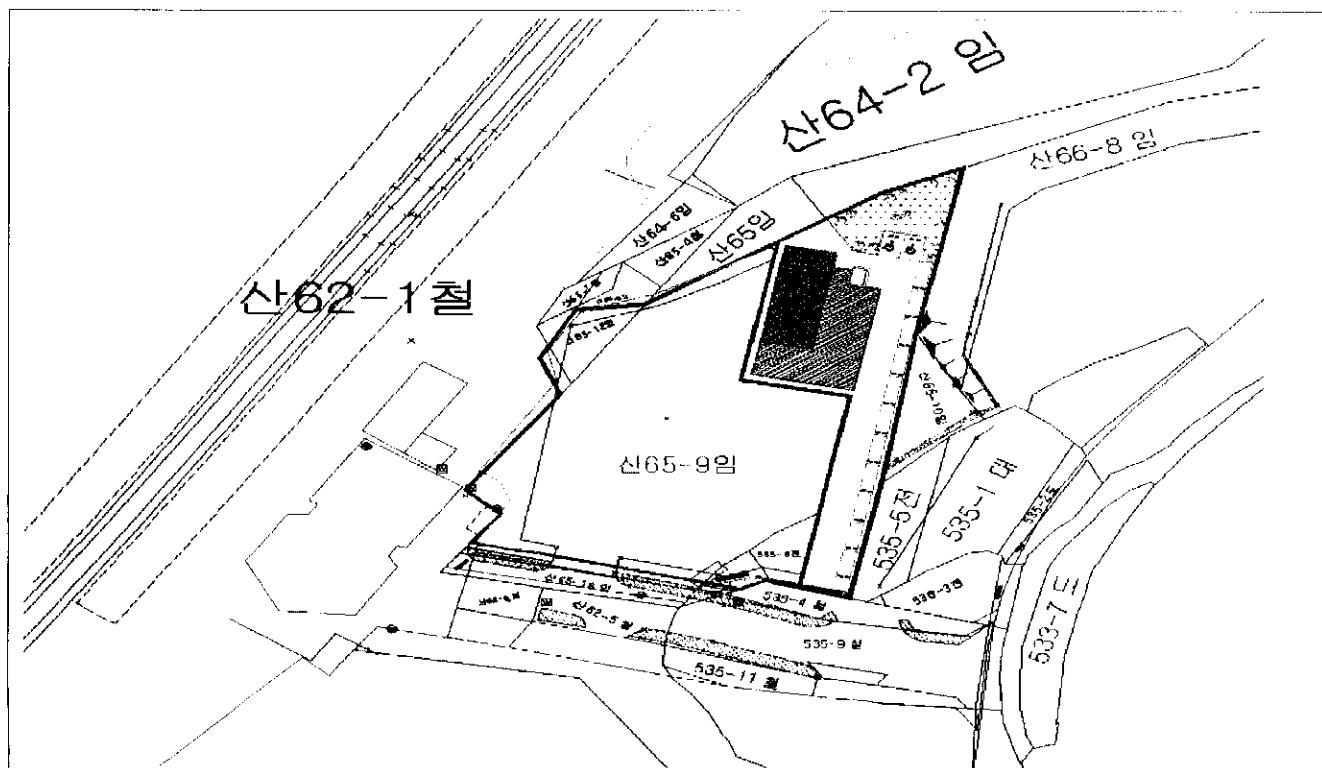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주변 현황도



■ 시설배치계획도



안산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노외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안산시의회 의견서

안산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노외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산시의회 의견을 제시함.

- 대상지 지역은 주거 밀집지역 및 역세권 지역으로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이므로 노외주차장은 일부가 공공청사로 변경되면 전체 주차면이 감소
되어 향후 환승을 위한 상시 주차차량 증가와 주변지역 재건축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른 주차수요 증가 및 공공청사 이용자들로 인한 주
차수요 증가 등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노외주차
장의 주차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 현재 노외주차장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노외주차장
과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은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청사의 출입구
부근 부설주차장은 일반인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공공청사 방문자의 주차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계획을 재검토하기 바라며, 공공청사의 부설주차장은 전체가 13면으로
계획되었으나 공공청사 근무자 차량과 방문자 차량을 주차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므로 충분한 주차장을 계획하기 바람.
- 공공청사 부지 성토로 인한 부지내 법면부분 및 부지경계의 법면부분
은 대지의 안전과 경관 등을 고려하여 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